

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이주희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6846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2. 12.

발 의 자 : 이주희 · 김한규 · 정혜경
양문석 · 정태호 · 이광희
김남근 · 한민수 · 정진욱
전종덕 · 김동아 · 용혜인
최민희 · 진성준 · 박지원
박해철 · 김 윤 · 송재봉
민병덕 · 박정현 · 곽상언
임미애 · 황정아 · 박용갑
김우영 · 이정현 의원
(26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공사계약·제조계약·용역계약 등을 체결한 후 물가변동, 설계변경,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그러나 설계변경의 범위에 규격변경 또는 과업내용의 변경이 포함되는지 명확하지 않아 공공 소프트웨어(SW) 사업 등의 계약에서 사업 수행 중 과업범위가 증가하더라도 계약금액 조정의 법적 근거가 분명하지 않아 계약당사자 간의 분쟁이 발생하고 있음.

이에 설계변경의 범위에 ‘규격변경 및 과업내용의 변경’을 명시적으

로 포함함으로써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변경 사항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, 공공사업에 대하여 적정한 대가 지급을 가능하게 하고 공공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19조).

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9조 중 “설계변경”을 “설계변경(규격변경 및 과업내용의 변경을 포함한다)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물가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에 관한 적용례) 제1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도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9조(물가변동 등에 따른 계약 금액 조정)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 약·제조계약·용역계약 또는 그 밖에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물가변동, <u>설계변경</u> ,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(천재지변, 전쟁 등 불가항 력적 사유에 따른 경우를 포함 한다)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(調整)할 필요가 있을 때에 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약금액을 조정한다.	제19조(물가변동 등에 따른 계약 금액 조정) ----- ----- ----- ----- <u>설계변경(규격변경 및 과업내 용의 변경을 포함한다)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